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23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김은혜의원 대표발의(제220262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3
가. 골재품질 수시검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22조의4 등)	3
나. 골재 이력관리 의무화(안 제22조의 등)	8

I. 김은혜의원 대표발의(제220262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은혜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8. 7.

다. 회 부 일 : 2024. 8. 8.

2. 제안이유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22.1) 등을 겪으면서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골재 수시검사 확대,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골재의 이동 경로를 파악·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됨.

골재의 품질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되고, 정기검사의 경우 수수료 징수에 문제가 없으나 수시검사는 골재의 사용자,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골재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명분이 부족하여 예산의 지원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또한 골재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관리를 위해 표준납품서를 마련하여 골재 생산자와 구매자가 이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고, 시스템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요구됨.

3. 주요내용

- 가.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수시로 진행하는 품질 검사에 대해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22조의4제2항 단서 신설).
- 나. 골재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관리하기 위해 골재의 이력관리 의무를 부여할 필요(안 제22조의5 신설).
- 다. 골재 이력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 처분 조치 정도를 마련할 필요(안 제52조제4항 신설).

4. 검토의견

가. 골재품질 수시검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22조의4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① (생략)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 ----- ----- -----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적인 품질검사 이외에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에게 필요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적인 품질검사 외에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품질관리전문기관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2조의4제2항1)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자가 골재를 공급하는 경

우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²⁾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⁷³⁾에서는 골재 품질검사의 방법을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⁴⁾하면서 골재채취업자가 받아야 하는 골재 품질 정기검사와 달리,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1) 「골재채취법」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①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골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하여 골재 품질검사를 진행 중에 있음.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7(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골재의 품질검사(이하 "골재품질검사"라 한다)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골재의 사용자가 골재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골재와 관련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골재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골재품질 관련 사고예방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국토교통부는 골재 채취여건 악화로 저품질 골재 유통 유인이 증가하여,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도입하여 품질관리 중

* 정기검사('22년부터, 연 1회)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품질검사(검사 7일전까지 통보)

** 수시검사('23년부터) : 국토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필요시 사전 통보 없이 진행)

그런데, 이러한 골제품질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와 관련하여 동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에 관한 현행법상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에는 골재를 공급하려는 골재채취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⁵⁾되어 있는 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시검사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부담 주체간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임.

따라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수시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주체를 국가(국토교통부장관)로 명시하여 수시검사 비용과 관련한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수시검사의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실시한 골제품질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 정기검사의 경우 불합격률이 2023년 5.3%, 2024년(6월 기준) 14.8%로 나타났으나,

5) 「골재채취법」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
3. 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
4.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2023년 25.0%, 2024년(6월 기준) 26.1%로 나타나 골재품질 수시검사의 효과성이 정기검사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이후 실시한 골재품질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표 >

기간	정기검사				수시검사			
	검사업체	합격	불합격	불합격률	검사업체	합격	불합격	불합격률
23.01~ 23.12	753건	713건	40건	<u>5.3%</u>	28건	21건	7건	<u>25.0%</u>
24.01~ 24.06	352건	300건	52건	<u>14.8%</u>	23건	17건	6건	<u>26.1%</u>

※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정기검사는 골재를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골재채취업자가 그 골재의 품질을 담보하여 골재채취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인 반면,

수시검사는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사용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임의적으로 골재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감안해 볼 때,

수시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수시검사의 목적에 부합해 보이고, 불량 골재로

인한 부실공사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수시검사의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국토교통부도 2023년 골재 품질검사 운영 결과 약 80개 업체에 대한 수시검사 필요성이 있었으나, 재정상의 문제로 28개 업체에 대해서만 품질검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⁶⁾과,

KS인증을 받은 골재품질 검사⁷⁾의 경우에도 정기검사 비용은 업체가, 수시검사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보된 업체 및 정기검사 불합격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6) <국토교통부 수시검사 비용추계 내용>

- (수시검사 지원) '23년 품질검사 운영 결과, 약 80개 업체에 대한 수시검사 필요성*이 있었으나, 재정 한계로 28개 업체 실시
- * 품질검사 불합격 업체 수 + 레미콘 제조사, 건설사, 지자체 등이 제보한 업체 수
- 향후 제보된 업체 및 정기검사 불합격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 차원으로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의 10%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
- ☞ 수시검사 지원 예산으로 매년 약 1억원* 소요 예상
- * '23년 골재생산 실적 업체(761개) × 수시검사 비율(10%) × 1회 검사비용(130만원)

- 7) 골재품질 수시검사는 산업표준화법 제20조에 따라 KS인증을 받은 골재(한국표준협회 등이 실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하고 있는 '시판품조사'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시판품조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국가기술표준원이 부담하고 있음.

「산업표준화법」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나. 골재 이력관리 의무화(안 제22조의5 등)

현행	개정안
<u><신설></u> 1. ~ 4. (생략)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1. (생략)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u>제22조의5(골재의 이력관리) 골재채취업자, 골재를 판매하는 자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는 골재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골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u> 1. ~ 4.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의5에 따른 골재의 이력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u>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u>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u>----- -----

개정안은 골재를 판매하는 자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는 골재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골재 이력을 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골재이력관리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근 환경규제 등으로 골재채취업자의 경우 골재채취를 위한 채취원 확보가 점진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골재공급량 부족 등으로 인해 골재업을 등록한 업체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불량골재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배합하는 등 불량골재의 공급 및 구매 유인이 높아지고 있음⁹⁾.

특히, 골재의 주요 사용처인 콘크리트의 경우 배합 및 타설 이후에는 공사현장에서 불량골재 포함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없어 콘크리트 품질 불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개정안은 채취원부터 건설공사 현장 납부까지 골재의 유통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량골재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골재이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 '국민안전 위협하는 불량골재 '깜깜이 유통'(동아일보 2024년 1월 31일)

· '아파트 붕괴' 얼마나 됐다고... 골재 36% 불량, 업체 78개사 불시 점검해보니(조선일보, 2023년 12월 20일)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골재를 판매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골재 판매 및 구매 시 골재이력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불량골재의 공사 현장 반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한편, 개정안 제52조제1항제4호는 정당한 사유없이 골재의 이력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골재이력관리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다만, 현행법 제3조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21조의2에서부터 제33조까지에 해당되는 현행법 제4장(골재의 채취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단서 조항을 통해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명시¹⁰⁾하고 있는데,

골재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는 안 제22조의5의 경우에는 골재채취의 주요 채취원이 산지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골재의 이력 관리에 산지가 포함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10) 「골재채취법」

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의3, 제22조의4 및 제32조(「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현행법 제3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단서 조항에 안 제22조의5를 포함하는 것이 개정안의 실효성 및 법체계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591